

강동구 암사동 「올림픽로」 통신설비 이설 및 철거를 위한

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서

2018. 02.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
 (주)딜라이브강동케이블티브이
 (주)엘지유플러스
 에스케이브로드밴드(주)
 에스케이텔레콤(주)
 드림라인(주)



통신시설 지중화공사 시행을 위한 이행 협약서

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「올림픽로」 지중화공사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행 협약서이다.

제 1장 총 칙

제 1조 (협약의 목적)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과 (주)딜라이브강동케이블티브이, (주)엘지유플러스, 에스케이브로드밴드(주), 에스케이텔레콤(주), 드림라인(주)의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공사 시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조 (당사자) 본 협약서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과 (주)딜라이브강동케이블티브이, (주)엘지유플러스, 에스케이브로드밴드(주), 에스케이텔레콤(주), 드림라인(주)이며, 편의상 강동구청을 “구청”이라 칭하고 (주)딜라이브강동케이블티브이, (주)엘지유플러스, 에스케이브로드밴드(주), 에스케이텔레콤(주), 드림라인(주)를 “통신사업자”라 칭하며, 개별 통신사를 대표하여 (주)딜라이브강동케이블티브이를 “대표사업자”라 칭한다.

제 3조 (사업구간 및 사업내용) 본 협약서의 사업구간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본 협약서의 지중화 사업구간은 강동구 선사사거리에서 암사동유적 입구(올림픽로, 고덕로 39 - 올림픽로108길)까지 700m 이내로 하며 동 구간의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주변지역을 포함한다.

② 본 협약서의 사업 내용은 통신선로를 지중화 하는데 필요한 통신관로, 맨홀 시설 및 기타 지상기기, 통신설비, 통신주의 설치 및 철거를 포함한다.

제 2장 공사비 산정 및 정산

제 4조 (공사비의 산정) “통신선로 지중화공사비”(이하 “공사비”라 한다)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계법령과 “통신사업자”의 규정 및 내부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“통신사업자”가 산정하고, “도로복구공사비”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“구청”이 산정한다.

제 5조 (공사비의 분담범위) “통신사업자”가 분담해야 할 분담금은 “통신사업자”가 산정한 “공사비”[도로굴착 및 관로공사를 포함한 통신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일체의

공사비를 포함한다. 단, 제4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강동구청에서 시행하는 “도로복구공사비”는 제외한다]의 50%로 하고 나머지는 “구청”이 부담한다. “구청”에서 시행하는 “도로복구공사비”는 “구청”이 전액 부담한다.

제 6조 (공사비의 납부) “구청”은 본 협약서 제4조에 의해 산정된 “공사비”중 제5조의 “통신사업자”의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50%에 해당하는 금액 중 통신시설 이설 부분 공사비는 각 “통신사업자”가 산출하여 청구시 개별 지급한 후 준공시 제7조 (공사비의 정산)에 따라 정산하고, 도로굴착 및 관로공사비는 대표사업자 산출하여 청구시 지급한 후 제7조에 따라 정산한다. “구청”은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분담금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“통신사업자”에게 납부한다.

제 7조 (공사비의 정산) “통신사업자”는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정산서류를 “구청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정산결과 환불금액이 발생할 경우 “구청”에게 환불하고, 부족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“구청”이 부족금액을 “통신사업자”에게 개별 지급하며, 증감액을 정산(환불 또는 추가지급)하는 경우 정산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 8조 (공사책임) “구청”과 “통신사업자” 사이에 제5조와 같이 “공사비” 부담에 관한 협의 성립 즉시 “구청”과 “통신사업자”는 상호 협의된 일정에 맞추어 조속히 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. 단, “구청”의 분담공사비 납부 지연으로 인한 공사일정 변경 및 지연 등의 책임은 “통신사업자”에게 묻지 않는다.

제 9조 (협약이행) “구청”은 협약 체결 후 제6조에 따라 “구청”이 부담하는 지중화 공사비를 “통신사업자”에게 성실히 납부 한다.

제 3장 공사시행

제 10조 (공사시행의 구분) 본 공사는 “통신선로 지중화공사”와 “도로복구공사”로 구분하며 “통신선로 지중화공사”는 “통신사업자”가, “도로복구공사”는 “구청”이 시행한다. 단, 주민통행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개소는 “통신선로 지중화공사”와 “도로복구공사”를 병행하여 시공한다.

제 11조 (공사의 착수시기) 본 공사는 “구청”이 “통신사업자”에게 제6조 공사비의 납부 후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착수한다.

제 12조 (설계변경) 공사추진 중에 사업구간의 조정 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

“통신사업자”는 “구청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.

제 13조 (민원처리) 공사기간 동안 제기되는 민원은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“구청”과 “통신사업자”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.

제 4장 사후관리 및 기타

제 14조 (통신설비 이설 부담) 본 공사로 인해 지중화 된 통신관련 설비 등에 관하여, 설치공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주민의 통행 불편 및 기타 민원해소 등의 사유로 “구청”이 이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“통신사업자”는 이설하여야 하며, “구청”은 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새로운 이설장소는 “구청”이 제공한다.

제 15조 (점용료 납부) 본 공사로 인해 설치된 관로, 맨홀, 지상기기 등 통신관련 설비의 도로점용료의 50%를 통신설비 존치 기간 동안 감면한다.

제 16조 (도로점용허가) 본 공사 완료 후 신규 통신공급 및 유지보수에 따른 도로 굴착의 필요가 발생하여 “통신사업자”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“구청”은 도로법에 의거 도로굴착 허용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점용허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7조 (협약서 해석)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상호간 의견이 다른 경우 또는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“구청”과 “통신사업자”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18조 (소유권·유지보수 등) “통신설비 등”의 소유권은 “통신사업자”에게 있으며, 이에 따라 “통신사업자”는 “통신설비 등”에 대한 향후의 유지보수(도로점용료 제외)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제 19조 (협약의 해지) “구청”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사비를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 “통신사업자”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사추진으로 이미 발생한 비용 및 협약 해지로 인하여 “통신사업자”에게 발생한 손해는 “구청”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20조 (효력발생) 본 협약은 “구청”과 “통신사업자”가 서명·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21조 (사업비 지출의 증빙자료제출) 본 공사 완료 이후 “구청”이 증빙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“통신사업자”의 각 통신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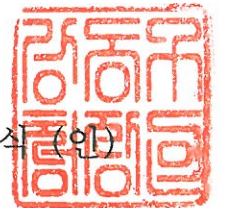
부 칙

본 협약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행협약서 6부를 동일하게 작성하여 “구청”과 “통신사업자”가 각각 기명·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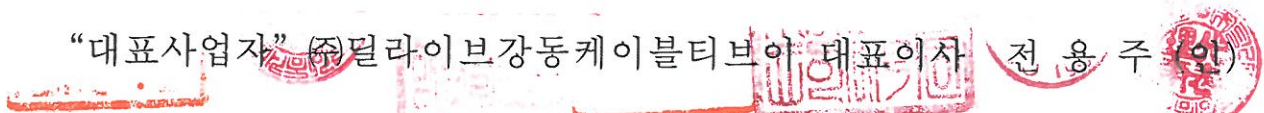
2018년 02월 일

“구 청”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 해 석 (인)



“대표사업자” (주)딜라이브강동케이블티브이 대표이사 전 용 주 (인)



“통신사업자”

(주)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권 영 수 (인)



에스케이브로드밴드(주) 대표이사 이 형 희 (인)



에스케이텔레콤(주) 대표이사 박 정 호 (인)



드림라인(주) 대표이사 김 형 석 (인)

